

2014. 07. 16(수)
제1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안자 (제안설명)	비고
1646	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창조정책담당관)	
1647	I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창조정책담당관)	
1648	III.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창조정책담당관)	
1650	IV. 충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	충주시장 (여성청소년과장)	
1651	V.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여성청소년과장)	
1652	VI.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체육진흥과장)	
1653	VII.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조정경기장관리소장)	



총 무 위 원 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①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06.30	2014.07.08	2014.07.15	2014.07.15	창조정책담당관
I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06.30	2014.07.08	2014.07.15	2014.07.15	창조정책담당관
III.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06.30	2014.07.08	2014.07.15	2014.07.15	창조정책담당관
IV. 충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	2014.06.30	2014.07.08	2014.07.15	2014.07.15	여성청소년과장
V.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06.30	2014.07.08	2014.07.15	2014.07.15	여성청소년과장
VI.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06.30	2014.07.08	2014.07.15	2014.07.15	체육진흥과장
VII. 충주시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06.30	2014.07.08	2014.07.15	2014.07.15	조정경기장관리소장

② 제안설명 요지

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체육·문화·관광 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2. 주요내용

- 사업소(4급)신설 : 시설관리센터
 - 과 신설 : 체육시설관리과, 문화시설관리과

- 사업소 폐지 : 공공시설관리소, 조정경기장관리소
- 소관사무 : 체육·문화·관광 시설의 운영 관리

I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체육·문화·관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센터를 신설 4급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준수를 위해 일반직 정원을 감.

2. 주요내용

- 총 정원 : 1,305명 → 1,302명(△3)
 - 집행기관 : 1,286명 → 1,283명(△3)
 - 의회사무국 : 19명
- 정원조정내역
 - 일반직 : 1,260명 → 1,257명(△3)
 - 3급 : 1명
 - 4급 : 7명 → 8명(+1)
 - 5급 : 65명
 - 6급 이하 : 1,184명 → 1,180명(△4)
 - 전문경력관 : 3명
 - 기타(정무, 별정, 연구, 지도) : 45명

III.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를 억제하고, 우리시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위원 임기
- 회의, 간사 및 규제신고센터 설치 등
 - 가. 위원회의 설치·기능(안 제2조)
 - 부시장 소속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하여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1차 연임 가능)
 - 다.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라. 회의(안 제6조)
 - 마.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안 제9조)
 -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IV. 충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분석평가의 대상(안 제4조)

-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 대상정책의 선정기준 및 절차, 제외대상

나. 분석평가의 시기(안 제6조)

-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 주요정책 계획,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 계획수립 전
-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의 충주시의회 제출 전

다.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안 제8조)

-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안 10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마. 분석평가 교육(안 제13조)

-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V.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

2. 주요내용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안 제17조 1호, 2호)

-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 일부 반환(안 제17조 3호~5호)

VII.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

2. 주요내용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안 제15조 1호, 2호)

-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 일부 반환(안 제15조 3호~5호)

VII.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정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경기장의 범주에 마리나센터, 조정체험장 추가 및 경기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사용허가 대상에 경기정을 추가하고 모터보트 및 경기정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제8조, 제14조)
- 다. 충주시 관내 조정팀이나 조정 전지훈련팀이 모터보트나 경기정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안 제9조)
- 라. 충주시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트하우스 객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함.
(안 제11조)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주시 산하 각종 체육·문화·관광 시설의 운영·관리를 통합 전담할 「시설관리센터」 신설에 관하여 2014. 5. 30일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시 산하의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운영·관리 중인 각종 체육·문화·관광 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시 산하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체육·문화·관광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충주시시설관리센터」 신설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증감내역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준수를 위해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정원총수를 1,305명 →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6명 → 1,283명으로 함(안 제2조)

• 정원 조정 내역

※ 4급 : 7명 → 8명(증 1)

※ 6급 이하 : 1,184명 → 1,180명(감 4)

• 주요 개편내역을 살펴보면

- 사업소에 신설되는 직제로

국단위 → 충주시시설관리센터를 신설

과단위 → 체육시설관리과(4팀), 문화시설관리과(4팀)을 신설

- 폐지되는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소와 조정경기장관리소 등 2개 부서를 폐지

→ 체육시설관리과내 팀으로 개편함.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정원 증원 및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감축에 관한 정원 조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 산하에 분산되어 관리·운영해오던 각종 체육·문화·관광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팀단위의 신설 또는 이동을 통하여 시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III.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시 발전의 저해 요인을 충주시 규제개혁 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과감히 정비·개혁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대상사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IV. 충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

○ 본 조례안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2조는 목적·정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을 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법률에 따라 3년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 예산의 사업별 및 기능별 세부항목 등 단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의시기, 성별영향분석의 평가를 반영토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 ~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12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문화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평가대상선정, 평가서작성, 분석결과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의무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위임한 상위법에 부합하고

- 우리시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성별 영향분석평가 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V.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 행정 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유에 의해 사용 중단 내지 철회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용료를 반환 할 경우 불분명하거나 반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시설서비스의 공급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일방적인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바,
-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개별 반환 사유 및 사유별 반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의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VII.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중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유에 의해 사용 중단 내지 철회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용료를 반환 할 경우 불분명하거나 반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시설서비스의 공급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일방적인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바,
-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개별 반환 사유 및 사유별 반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개선 협의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VII.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 본 개정조례안은

조정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경기장의 정의에서 시설에 경기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상업, 휴식, 오락 등을 위한 시설인 “마리나 센터”와 조정체험 교육장, 충주시 관내 또는 전지훈련 조정팀의 웨이트트레이닝 등을 위한 시설인 “조정체험장”시설을 추가하고 조정훈련 대회시 선수용으로 사용되는 무동력선인 “경기정”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 하였음.
- 안 제9조에서 충주시 관내 조정팀이나 조정 전지훈련팀이 모터보트나 경기정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1조는 충주시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음.

○ 위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현행 조례는 모터보트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을 충주시 관내조정팀인 충주시청 남자일반부와 여자일반부, 국원고팀, 충주여고팀, 충일중팀, 칠금중팀 6개 조정팀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타 지역 조정경기장의 전지훈련 유인책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타 지역 조정팀에게도 모터보트 및 경기정 사용료 전액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의 위상을 높이고 시설 임대수입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거두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안 제11조는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시 보트하우스 객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향후 조정경기장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나 행사시 운영요원

등의 숙박 수요 발생을 대비해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정경기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조정 경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④ 질의 · 답변 요지

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이종갑 의원

-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기 위해 4급을 증원하고 하위직을 감원하는 이유?

【답변】

- 총액인건비 초과로 교부세 등 폐널티를 받고 있는 바 점차적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수에 맞추어 감원하고 있으며 감원하는 인력은 운전직으로 일반 읍면동에서 일반직 직원이 행정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연감소시키고 있음.

I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없음”

III.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 산지관리법과 관련하여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시 자치단체 조례로 21도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지?

【답변】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경사도 21도 미만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용함. 청주시 경우 15도 미만, 제천시는 20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

IV. 충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

【질의】 “없음”

V.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에 대해 시민들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검토하겠음.

VI.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농민문화체육센터 연간 사용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 일일 기준 100명정도 이용하고 있음.

VII.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질의】

- 조정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요원 배치등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규칙 등에 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

- 안전요원 관련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여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영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⑤ 심사결과

- (1)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4) 충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 : 원안가결
- (5)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6)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7)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